■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 <개정 2019. 12. 20.>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		이 요약서는「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 상호(명칭)		하크코리아 유한회사
판매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5, 2층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2)
판매업 대표전화		02-3484-5700
유해화학물질 정보	물질명	Hydroquinone
	고유번호 또는 식별번호 (CAS No.)	123-31-9
	용도	수질 분석용 시약
취급 기준 준수	취급시설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 내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샤워 시설 또는 세안시설을 갖출 것 - 폭발 위험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사용되는 장비는 반드시 접지할 것. - 물질의 성상(고체,액체,기체)에 따라 취급할 때 분진, 흄, 가스, 미스트, 증기, 스프레이의 취급자 노출을 막기 위해 국소배기 장치 시설을 갖출것 - 노출기준 이상에서는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
	화학사고 예방	-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만 사용할 것. - 분진 발생과 분진 축적을 최소화할 것. - 옷과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 흡입을 포함한 모든 인체 접촉은 피할 것. - 노출 위험이 발생할 때, 보호의를 착용할 것. - 움푹한 곳에 모이지 않도록 할 것. - 대기상태가 확인될 때까지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가지 말 것. - 사람, 외부에 노출된 식품이나 식기와 접촉하지 말 것. - 혼합금지물질과 접촉시키지 않을 것. - 취급 시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 것. -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용기를 안전하게 밀폐시킬 것. - 용기에 물리적인 위험을 피할 것. - 취급 후에는 항상 비누와 물로 손을 씻을 것. - 작업복은 분리하여 세탁할 것. - 재사용 전에 오염된 옷을 세탁할 것. - 적합한 작업장을 사용할 것. - 저장 및 취급 시, 제조자의 권고사항을 살펴볼 것. -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기 노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기질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 - 빈 용기에 잔류물질은 바닥에 쌓여서 축적될 수 있으며 적당한 점화원이 존재하는 경우에 폭발할 수도 있으므로 용기에 절삭, 천공, 연마 또는 용접을 해서는 안되고, 그 러한 행위들이 적절한 작업 안전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용기 근처(차있거나 부분적으로 차있거나 비어 있는 용기)에서 수행되면 안됨. - 산화제와의 반응을 피할 것.
	보관・저장	- 직사광선을 피해서 저장할 것. - 원래의 용기에 저장하고 안전하게 밀폐시킬 것. - 서늘하고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저장할 것. - 혼합금지물질, 식료품 저장 용기와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할 것. -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용기를 보호하고 정기적으로 누수를 확인할 것. - 저장 및 취급 시, 제조자의 권고사항을 살펴볼 것. - 양이 많을 경우 제한된 구역에 저장하고 그 지역의 수원(빗물, 지하수, 호수나 강 포함)으로부터 저장 장소를 격리할 것. - 물이나 공기 중으로 의도치 않은 방출을 막는 것은 긴급재해관리계획의 목표가 되며 그 지방의 허가권과 함께 협의가 요구됨. - 수산화나트륨, 강산화제, 알칼리, 산화제와 격리하고 식료품 저장 용기와 멀리 떨어진 곳에 저장할 것
	운반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적재·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 - 유해화학물질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이어야 함.
	기타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할 것 -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서 및 화학 물질안전원, 합동재난방재센터 등 화학사고대응기관에 연락할 것 -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